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의료행위 동의서)

송 필 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 교실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이사



의료사고

〈연도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A)	2020년(B)	전년대비*
계	12,293 (100.0)	1,907	2,420	2,926	2,824	2,216	
전년대비**	연평균*** (3.8)	-	26.9	20.9	△3.5	△21.5	
내 과	1,842 (15.0)	262	420	457	404	299	△26.0
외 과	802 (6.5)	119	157	193	172	161	△6.4
정 형 외 과	2,614 (21.3)	442	492	587	672	421	△37.4
신 경 외 과	1,188 (9.7)	177	223	275	271	242	△10.7
성 형 외 과	617 (5.0)	83	102	160	151	121	△19.9
흉 부 외 과	280 (2.3)	45	67	71	55	42	△23.6
산 부 인 과	672 (5.5)	105	146	188	120	113	△5.8
소아청소년과	144 (1.2)	26	41	34	22	21	△4.5
안 과	437 (3.6)	55	75	99	111	97	△12.6
이 비 인 후 과	368 (3.0)	59	65	119	70	55	△21.4
피 부 과	290 (2.4)	45	54	65	57	69	21.1
비 뇨 의 학 과	292 (2.4)	43	44	67	78	60	△23.1
신 경 과	163 (1.3)	35	22	38	39	29	△25.6
마취통증의학과	148 (1.2)	27	26	22	35	38	8.6
정신건강의학과	96 (0.8)	18	27	24	16	11	△31.3
영 상 의 학 과	37 (0.3)	5	7	5	11	9	△18.2
진단검사의학과	35 (0.3)	8	3	4	11	9	△18.2



의료사고

■ 협의의 의료사고

- 의료행위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악 결과

■ 광의의 의료사고

- 의료행위의 악 결과 뿐만 아니고, 의료관련 의료 외적 모든 사고를 포괄하는 개념
- 의료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



의료사고

-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태만 →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

- **의료과실**
 - 의료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의료분쟁과 의료소송

-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82.8%, 1981-1995년까지) 많음.**
- **의료소송: 의료분쟁 중 법적인 쟁송 절차에 들어간 것**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과 거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



현 재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



의료책임

■ 진료과실

- 진료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진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를 해야 할 의무의 위반

■ 설명의무위반

- 동의가 무효이거나 동의없이 이루어진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후두종양제거수술 후 발성기능장애가 후유증으로 발생한 사건

손해배상

[대법원, 1979. 8. 14., 78다488]



【판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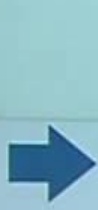
환자의 수술승락권의 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판결요지】

환자가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한 것이어서 불법해위가 성립된다.

신해철법이란?

환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전

후



병원 동의 → 조정

소송

병원 동의 X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의료적 침습행위

수술을 위한 개복

자궁외 임신

오진

자근근종 : 자궁적출



※ 정당화 근거 (위법성조각)

제20조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의사의 충분한 설명' 전제



설명의무의 근거

- **도덕적·윤리적 근거:** 히포크라테스 선서, 리스본 선언...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公·私法적 근거:** 의료법 제24조의 2,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자의 의도와 해석론을 통해서 의사의 의료행위로 해석



설명의무의 주체

-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사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설명 의무의 상대방

환자가 의식불명이고 누가 보호자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보호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도저히 승낙을 받아 내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낙을 받지 않고 치료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가 치료거부의 정당한 이유도 되지 못하므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승낙 없이 치료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은 자신의 미래에 **중대한 결과**를 소대할 수 있으며 긴급한 처치가 아닌 문제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반대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상대방

- 수술시행 전 환자의 아들이자 보호자인 A씨에게 설명을 하였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피고 2 (의사)가 직장암 환자 (망인)에게 저위전방절제술 (복강경)을 시행하였고,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1 (망인의 아들, 보호자)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 2는 수술 전 원고 1에게 망인의 상태나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의료행위 동의서



수술동의서 작성의 시기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설명은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지는 신체침습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의 설명을 환자가 이해를 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과의 효과와 위험성을 비교형량 할 수 있는 **일정한 고려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nclusions



← Right Way
Wrong Way →

"동의합니다"



- 의료분쟁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 의사는 이런 입증을 위해서 수술동의서의 해당 항목에 **밑줄을 치거나 중요 표시 체크를 하면서**,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흔적이 있는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된 수술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함께 환자들이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진정한 동의의 표시란**도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 질의와 문답

수사대비책

1. 허둥대지 말자.



2. 조사받는 신분을 잘 가늠하자.

3. 초기진술에 신중하자. 조서는 꾸며진다.

4.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권리
장전

5. 야간조사, 주말조사 등 적절하지 않은 수사는 거부할 수 있다.

6.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날인하자.





Thank you for your attentions

